

부산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0가단3494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9. 29.

판 결 선 고 2021. 12. 1.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0. 5.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20. 7. 접수 제399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0951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29. 'D은 원고에게 4,747,837원 및 그 중 2,119,455원에 대하여 200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10. 27. 확정되었다.

나. D의 아버지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5. 1.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피고(망인의 처이자 D의 어머니이다), D, F, C(F, C은 망인의 자녀이다)이 있었는데, 2020. 7. 3.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20. 5. 1.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포항시 남구청, 포항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채무를 공제한 가액 중 D의 상속지분(2/9)에 해당하는 부분(약 3,200,000원)을 초과하는 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D, F, C 사이에 2020.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전부 상속하되, D에게 상속지분(2/9)의 대가로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서가 적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D에게 실제로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설령 D이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D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의 상속인인 D의 상속지분은 2/9인바,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포기된 D의 상속지분 2/9는 피고가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에 관하여 2020. 5. 1.1)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별 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58.8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대지권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동구 대 255㎡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25500분의 5102

(- 이상 부산지방법원 부산전통기소 / 원 소유자)

1)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일자는 2020. 7. 2.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일자가 2020. 5. 1.이므로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체결일자를 2020. 5. 1.로 특정한다.